

청탁은 거리두기, 청렴은 내 곁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사전알리미(정보제공) 시행 알림 및 협조요청

1. 국민 보건을 위한 귀 협회(학회)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하였고, 2020년부터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붙임1 참조) 마련 및 사전알리미 제도 등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에 대한 취급정보를 분석하여 사전안내(정보제공)를 시행하고, 해당 처방 사례에 대한 의학적 사유를 수집하기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의료쇼핑방지정보망)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주요내용
- 가. (일반원칙)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인식하고 적정량 투약하여야 함
 - 나. (목적) 수술·시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아야 함
 - 다. (횟수) 간단한 시술·진단을 위한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4. 이에 따라 마약류 프로포폴의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488명의 의사에게 사전알리미(정보제공)를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석 개요 >

- **취급(처방)일자:** 2021. 8. 1. ~ 2022. 1. 31. (6개월간)
-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의 기준
 - 1) (목적) 전신마취 수술 · 시술 및 진단이나 인공호흡 중환자의 진정 목적을 벗어나 사용한 경우
 - * 질병분류기호가 "정신 및 행동장애(F)" 또는 "특수목적코드(U:한의병명, 한의병증)"의 경우
 - 2) (횟수) 간단한 시술 · 진단에 월 1회 초과 투약한 경우
 - 7회 초과 투약한 경우
 - 3) (용량) 최대 허가용량([남성] 7,450mg [여성] 5,960mg) 초과 투약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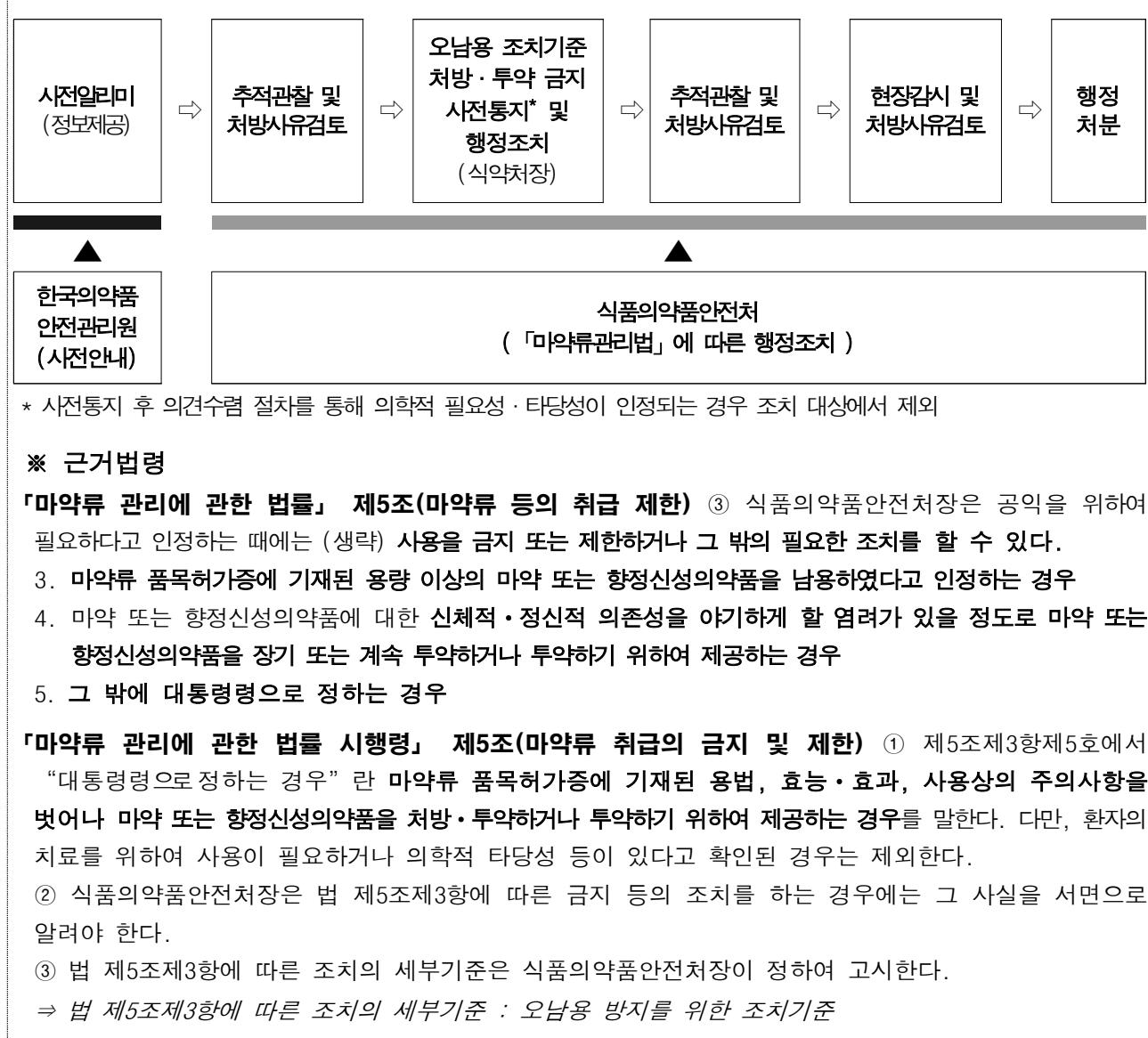
5. 우리 원에서는 사전알리미(정보제공)를 수신한 의사의 프로포폴 처방 · 사용 내역을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다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

- 동 정보제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 · 투약에 대한 사전통지* 및 취급금지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의료현장에서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붙임1 참조)을 준수하여 처방 · 투약하도록 귀 회원 및 비회원께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통지 후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 ·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치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의학적 필요성 등에 따라 동 안전사용기준(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 · 사용한 경우라면 이와 관련한 처방사유 및 근거자료 등을 2022년 6월 30일(목)까지 “의료쇼핑방지정보망(data.nims.or.kr)”으로 제출(관련 메뉴얼 붙임2 참조)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해당 처방 사유의 적정성 · 타당성 등을 검토할 예정임

<운영 절차>



6. 아울러, 프로포폴은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인 만큼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할 시 처방의사가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data.nims.or.kr)」을 통해 환자의 과거 프로포폴 사용 이력을 확인하도록 귀 회원 및 비회원께 함께 홍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7. 한편, 귀 협회(학회)에서는 의료 현장에서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 협회(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세미나 및 연수교육 등에서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과 사전알리미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널리 홍보 및 교육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1부.
2. 처방사유 의견제출 관련 메뉴얼 1부. 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대한의사협회장 귀하, 대한약사회장 귀하,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귀하, 대한가정의학회장 귀하,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귀하,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장 귀하, 대한마취통증의학회장 귀하,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 귀하, 대한비만학회장 귀하, (직)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귀하, 대한산부인과학회장 귀하,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 귀하, 대한신경과의사회장 귀하, 대한신경 과학회장 귀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장 귀하,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귀하, 대한이비인후과 학회장 귀하,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귀하,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귀하, 대한종양내과학 회장 귀하, 대한피부과의사회장 귀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귀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귀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귀하, 대한병원협회장 귀하, 한국병원약사회장 귀하, 대한 치과병원협회장 귀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귀하, 대한중소병원협회장 귀하

과장	이재광	팀장	한문수	본부장	최광연	원장	04/21 오정완
----	-----	----	-----	-----	-----	----	--------------

협조자

시행 마약류정보분석팀-271 (2022. 4. 21.) 접수 ()

우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30 4층 / <https://www.drugsafe.or.kr>

전화 1670-6721 / 전송 / datanims@drugsafe.or.kr / 공개